

한국의 기타결 FTA의 반덤핑 규정 비교 및 분석

엄준현 무역통상실 다자통상팀 연구원 (jheom@kiep.go.kr, Tel: 3460-1149)

차 례 ● ● ●

1. 배경
2. 기타결 FTA의 반덤핑 규정 비교 및 분석
3. 시사점

주요 내용 ● ● ●

- ▶ 우리나라는 한·중 FTA의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상 중이고, RCEP 협상에 참여하고 있으며 TPP 협상에의 참여를 모색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기타결 FTA를 비교·분석하여 협상에 참고가 될 사항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함.
- ▶ 우리나라가 발효 또는 타결시킨 FTA의 반덤핑 규정에는 총 13개 조항이 있는데, 각 FTA마다 포함하고 있는 조항의 수와 조항의 법적 구속력에는 차이가 있음.
 - 13개 조항은 통지, 협의, 영어로 작성된 문서의 인정, 제로잉 금지, 재심에서의 미소마진 원칙 적용, 누적 평가에서 경쟁조건 고려, 약속, 공공이익 고려, 최소부과 원칙, 재심 종료 후 조사 제한, 반덤핑 조치 필요성 검토, 분쟁해결절차 배제, 반덤핑위원회임.
 - 통지, 협의, 재심에서의 미소마진 원칙 적용, 누적평가에서 경쟁조건 고려, FTA 분쟁해결절차에서 반덤핑 조치 관련 분쟁의 배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로 규정된 반면, 제로잉 금지, 공공이익 고려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조항으로 규정됨.
- ▶ WTO 반덤핑 협정의 내용보다 추가된 내용인 이른바 ‘WTO Plus’ 조항이 발견됨
 - 통지 기한이 WTO 반덤핑 협정에서 조사개시 전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한·인도 FTA에서는 조사개시 10일 전, 한·EU, 한·터키 FTA에서는 15일 전까지로 각각 규정되었음.
 - 제로잉(Zeroing)은 WTO 반덤핑 협정에는 관련 조항이 없는 반면, 한·싱가포르, 한·인도, 한·터키, 한·콜롬비아, 한·호주 FTA에서 제로잉 금지를 명문화함.
 - 재심에서의 미소마진 원칙(De Minimis Rule) 적용 조항도 WTO 반덤핑 협정에는 없지만 우리나라의 기타결 FTA 중에서 한·EU, 한·터키 FTA에서 이를 법적 의무로 규정하였음.
- ▶ 신규 FTA 협상에서 WTO Plus 조항을 추가해 나가고, 기존 FTA의 개정협상에서 반덤핑 규정을 강화해야 함.
 - 신규 FTA 협상에서 제로잉 금지와 재심에서의 미소마진 원칙 적용을 법적 의무로 명문화해야 함.
 - 한·인도,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미비점을 강화·보완하여 조사당국의 자의적 판단을 방지해야 함.

1. 배경

■ 우리나라는 2014년 7월 현재까지 12건의 FTA를 발효시키거나 타결시켰음.¹⁾

-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 발효를 시작으로 2013년 한·터키 FTA의 발효까지 총 9건의 FTA를 발효시켰음.
- 이 외에도 우리나라는 2014년 7월 현재 한·콜롬비아, 한·호주, 한·캐나다 FTA를 타결시켰음.²⁾

■ 우리나라가 타결시킨 FTA의 반덤핑 규정에 관한 연구가 일부 있으나,³⁾ 한·콜롬비아, 한·호주, 한·캐나다 FTA가 타결되기 전의 연구여서 최근 타결된 FTA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우리나라의 기타결 FTA를 전체적으로 비교·정리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배경에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발효시키거나 타결시킨 FTA에서의 반덤핑 규정을 비교 및 분석하는 작업은 앞으로의 협상을 준비하는 데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한·중 FTA의 연내 타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⁴⁾ RCEP, TPP와 같은 이른바 Mega-FTA 협상에도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를 모색 중임.⁵⁾

2. 기타결 FTA의 반덤핑 규정 비교 및 분석

가. 개관

■ (세부조항) 우리나라의 기타결 FTA 반덤핑 규정에는 통지, 제로잉 금지, 미소마진, 피해의 누적 평가, 공공이익 고려, 최소부과, 재심 종료 후 조사 제한, 약속 등 13개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표 1 참고).⁶⁾

1) ‘타결(妥結)’은 비록 조약법 협약상의 정식용어는 아니지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의견이 대립된 양편에서 서로 양보하여 일을 마무리함’이므로, 합의의 형식과 내용(form and content)에 관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는 단계인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9조의 ‘조약문의 채택(adoption of the text)’에 해당함. 김대순(2013), pp. 149~150.

2) 여기서 기타결 FTA는 기발효된 FTA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하고자 함.

3) 최원목(2013), pp. 253~259.

4)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4년 7월 3일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의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음. 「한중 FTA 연내 타결 약속한 시진핑」(2014. 7. 7), 『한국경제매거진』.

5)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

- 통지와 최소부과가 우리나라의 기타결 FTA에서 가장 많이 규정되어 있는 조항인 반면, 반덤핑 조치의 필요성 검토에 대한 조항이 가장 적게 규정되어 있음.
- 우리나라의 기타결 FTA 중에서 반덤핑 분야의 세부조항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FTA는 한·EU FTA인 반면, 한·ASEAN FTA는 WTO 반덤핑 협정을 준수할 것을 확인하는 내용만 규정되어 있음.

표 1. 우리나라의 기타결 FTA 반덤핑 규정의 세부조항과 구속력

	FTA 명칭	통지	통지	협의	영어 문서	제로잉	미소 마진	누적 평가	약속	공공 이익	최소 부과	재심 종료 후 조사제한	반덤핑 필요성 검토	분쟁해결 절차배제	반덤핑 위원회 포럼
	계	57	9	7	2	5	2	2	4	2	8	3	1	6	5
1	한·칠레	1	·	·	·	·	·	·	·	·	·	·	·	○	·
2	한·싱가포르	3	·	·	·	△	·	·	·	·	△	·	·	○	·
3	한·EFTA	5	○	○	·	·	·	·	·	·	○	·	○	·	○
4	한·ASEAN	0	·	·	·	·	·	·	·	·	·	·	·	·	·
5	한·인도	4	○	·	·	△	·	·	·	·	○	○	·	·	·
6	한·EU	11	○	○	○	·	○	○	·	△	○	○	·	○	○
7	한·페루	5	○	○	○	·	·	·	·	·	△	·	·	·	△
8	한·미국	5	○	○	·	·	·	·	○	·	·	·	·	○	○
9	한·터키	7	○	·	·	△	○	○	·	·	△	○	·	○	·
10	한·콜롬비아	5	○	○	·	△	·	·	○	·	·	·	·	○	·
11	한·호주	5	○	○	·	△	·	·	○	·	○	·	·	·	·
12	한·캐나다	6	○	○	·	·	·	·	○	△	△	·	·	·	△

주: ○(의무 규정), △(권고 규정), ·(규정 없음).

자료: 협정문을 기초로 필자 작성.

■ (구속력) 통지, 협의, FTA 분쟁해결절차에서 반덤핑 조치 관련 분쟁의 배제는 모든 기타결 FTA에서 의무조항으로 규정된 반면 제로잉 금지, 공공이익(Public Interest) 고려는 권고조항으로만 규정되었음.⁷⁾

6) 세부조항의 수 13개는 고정불변인 것이 아니라 평가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임.

7)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shall'로 규정된 경우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조항으로, 'should'로 규정된 경우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무조항임.

■ (WTO Plus) 우리나라의 기타결 FTA 반덤핑 규정은 FTA라는 성격 자체 때문에 WTO 반덤핑 협정과 달라진 조항을 제외하면 모든 규율 분야에서 WTO 반덤핑 협정보다 발전된 부분인 이른바 ‘WTO Plus’를 포함하고 있음(표 2 참고).⁸⁾

- 통지, 제로잉 금지, 최소부과 원칙 조항에 WTO Plus가 가장 많은 반면, 협의조항은 한·EU FTA를 제외한 우리나라의 나머지 기타결 FTA에서 WTO 반덤핑 협정의 수준과 동등한 수준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기타결 FTA 중에서 WTO Plus를 가장 많이 포함하는 FTA는 한·EU FTA이며, 한·칠레, 한·아세안 FTA는 WTO Plus로 평가할 만한 내용이 없음.

표 2. 우리나라의 기타결 FTA 반덤핑 규정의 WTO Plus 조항

	FTA 명칭		통지	협의	영어 문서	제로잉	미소 마진	누적 평가	약속	공공 이익	최소 부과	재심종료 후 조사제한	반덤핑 필요성 검토
	계 ¹⁾	33	9	1	2	5	1	2	3	2	4	3	1
1	한·칠레	0	·	·	·	·	·	·	·	·	·	·	·
2	한·싱가포르	1	·	·	·	+	·	·	·	·	=	·	·
3	한·EFTA	3	+ ²⁾	=	·	·	·	·	·	·	+	·	+
4	한·ASEAN	0	·	·	·	·	·	·	·	·	·	·	·
5	한·인도	4	+ 10일전	·	·	+	·	·	·	·	+	+ 12개월	·
6	한·EU	8	+ 15일전	+	+	·	+	+	·	+	+	+ 12개월	·
7	한·페루	2	+	=	+	·	·	·	·	·	=	·	·
8	한·미국	2	+	=	·	·	·	·	+	·	·	·	·
9	한·터키	4	+ 15일전	·	·	+	=	+	·	·	=	+ 12개월	·
10	한·콜롬비아	2	+	=	·	+	·	·	=	·	·	·	·
11	한·호주	4	+	=	·	+	·	·	+	·	+	·	·
12	한·캐나다	3	+	=	·	·	·	·	+	+	=	·	·

주: 1) 계에는 +(WTO Plus)만 집계하였음.

2) +(WTO Plus), =(WTO equivalent), ·(규정 없음).

3) [표 1]의 분야 중 FTA 분쟁해결절차에서의 배제와 반덤핑위원회 규정은 FTA 협정의 조항이라는 사실에서 유래된 것으로, WTO 협정문과의 비교가 적당하지 않아 [표 2]에서는 제외하였음.

자료: 협정문을 기초로 필자 작성.

8) 13개 규율 분야 중 FTA 분쟁해결절차에서 반덤핑 조사 관련 분쟁을 배제하는 것과 반덤핑위원회 또는 포럼을 두는 것은 WTO 반덤핑 협정보다 발전된 부분이라기보다는 FTA라는 성격 자체에서 유래된 것이기 때문에, WTO Plus 포함 여부는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분야에 대해서만 검토하기로 함(표 2 참고).

나. 주요 조항별 분석

1) 통지

■ WTO 반덤핑 협정 제5.5조는 조사당국에 조사개시 신청서가 접수된 이후부터 조사를 개시하기 전까지 조사대상 수출자 또는 생산자와 관계된 WTO 회원국 정부에 통보할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통지의 기한, 내용,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논란이 있었음.

- 통지 기한에 대해서 반덤핑위원회(The Committee on Anti-Dumping Practices)는 조사당국이 반덤핑 조사 개시 신청서를 접수한 후 ‘가능한 한 신속히(as soon as possible)’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should)하다는 권고를 1998년 10월 29일 채택하였음.⁹⁾
- WTO 회원국들이 참고할 수 있는 지침(guideline)이 마련된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고, 또한 가능한 한 신속하게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은 기한으로서 기능하기에는 명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사당국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는 등 여전히 문제가 있음.
- 통지의 내용에 관해서 폴란드산 H-Beams 사건의 패널은 WTO 반덤핑 협정문이 반덤핑 조사신청서 접수 이후부터 통지하도록 규정한 점을 고려하면 조사신청서가 접수된 사실만을 통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정하였음.¹⁰⁾
- 통지 방식으로 구두(oral) 통지도 허용되는가가 문제 되는데, 폴란드산 H-Beams 사건의 패널은 WTO 반덤핑 협정문의 해석상 서면 통지만이 인정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구두 통지가 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음.¹¹⁾

■ 기타결 FTA에서는 통지 기한을 조사 개시일로부터 특정일 전까지로 정한 점, 통지 방식으로 서면 통지를 요구한 점, 통지의 내용으로 조사신청서를 접수한 사실 외에 질의서 사본과 수출자 또는 생산자 목록을 함께 요구한 점에서 WTO 반덤핑 협정보다 명확화된 것으로 분석됨.

- 통지 기한에 대해서 한·인도, 한·EU, 한·터키 FTA는 조사 개시일로부터 특정일 전으로 정하였음.
- 한·인도 FTA는 조사 개시일로부터 적어도 10일 전까지,¹²⁾ 한·EU, 한·터키 FTA에서는 조사 개시일로부터 15일 전으로 설정되어 WTO 반덤핑 협정보다 명확해졌음.¹³⁾
- 통지 내용과 관련해서 한·페루 FTA는 기타결 FTA 중에서 반덤핑 조사신청서를 접수한 사실 외에 조사당국이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송부한 질의서 사본, 수출자 또는 생산자 목록도 함께 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유일한 FTA임.¹⁴⁾

9) WTO(1998), para 3.

10) WTO Panel Report(2000), paras. 7.89-7.90.

11) *Ibid.*, para. 7.91.

12) 한·인도 FTA 제2.14조(조사 신청의 통보 및 정보교환).

13) 한·EU FTA 제3.9조(통보) 제1항, 한·터키 FTA 제4.8조(통보 및 협의) 제1항.

- 통지 방식으로 한·EFTA, 한·EU, 한·페루, 한·미, 한·터키, 한·콜롬비아, 한·호주, 한·캐나다 FTA는 서면 통보를 요구하고 있음.

2) 제로잉(Zeroing)¹⁵⁾

■ WTO 반덤핑 협정에는 제로잉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WTO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제로잉 유형별로 협정 위반이 확인되고 있음.

- WTO 반덤핑 협정에 제로잉을 금지하는 규정도 허용하는 규정도 없는 이유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협상 참여국들 사이에 제로잉 금지에 대해 합의 도출에 실패하였기 때문임.
- 이에 미국은 자국의 국내법으로 제로잉을 도입하였고, 제로잉이 문제된 일련의 WTO 분쟁에서 제로잉이 반덤핑 협정 위반으로 판정되고 있어 논란은 상당부분 해소된 것으로 평가됨.
 - 재심에서는 제로잉이 허용되는지가 문제된 사례에서 제로잉 사용이 협정 위반으로 판정되었음.¹⁶⁾
- 그러나 판정의 효력은 분쟁사안에서 문제가 된 유형의 제로잉에만 미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WTO 분쟁해결 패널의 판정으로 모든 덤핑 유형에 대해 제로잉이 일반적으로 금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 DDA 협상에서 표적 덤핑(Target Dumping)에 대해서는 제로잉을 허용할 것인지 논란이 되었는데,¹⁷⁾ 전통적으로 제로잉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던 인도조차 표적 덤핑에 대해서는 제로잉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취하였음.¹⁸⁾
 - 현재 WTO 분쟁해결제도에 회부되어 있는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조사에서 표적 덤핑과 더불어 제로잉이 여전히 문제되고 있음.¹⁹⁾
 - 나아가 표적 덤핑이 협정 위반으로 판정된다고 하더라도 WTO 반덤핑 협정에는 제로잉 금지의 근거로 제시한 조항도 있는 반면,²⁰⁾ 다른 해석이 협정에 일치하는 것으로 판정될 가능성을 인정하여 유연성을 부여하는 조항도 있기 때문에,²¹⁾ 미국이 새로운 유형의 제로잉을 사용하여 기존 판정을 회피할 가능성은 여전히.

■ 우리나라의 기타결 FTA 중에서 한·싱가포르, 한·인도, 한·터키, 한·콜롬비아, 한·호주 FTA가 제로잉

14) 한·페루 FTA 제8.9조(반덤핑 및 상계조치) 제5항.

15) 덤핑마진을 계산할 때 음(-)의 값이 나오는 경우에 음의 값을 합산하지 않고 영(0)으로 처리하는 계산방식으로, 결과적으로 덤핑마진이 높게 산출됨.

16) WTO Appellate Body Report(2009), *United States — Continued Existence and Application of Zeroing Methodology*. WT/DS350/R. (October 1)

17) 표적 덤핑(Target Dumping)은 상이한 구매자, 지역, 또는 기간별로 현저히 다른 수출가격의 양태가 발견되고 가중평균의 비교 또는 거래별 비교 사용으로 이러한 차이점이 적절히 고려될 수 없는 덤핑 유형을 의미함. WTO 반덤핑 협정 제2.4.2조

18) 박노형, 박성훈(2010), p. 57.

19) 「우리나라산 세탁기에 대한 미 반덤핑·상계관세조치의 WTO 분쟁해결절차 회부」(2013년 8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

20) WTO 반덤핑 협정 제9.3조. 반덤핑 관세의 금액은 제2조에 따라 정해진 덤핑마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21) WTO 반덤핑 협정 제17.6조 (ii)항. 패널은 국제공법의 해석에 관한 관습적인 규칙에 따라 이 협정의 관련규정을 해석한다. 패널이 이 협정의 관련규정에 대해 하나 이상의 해석이 가능하다고 판정하고, 당국의 조치가 허용되는 해석 중 하나에 근거하는 경우 패널은 당국의 조치가 이 협정에 일치하는 것으로 판정한다.

금지를 규정한 것은 WTO Plus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 사항인 한계가 있음.

- 인도와 같이 전통적으로 제로잉에 반대하는 입장인 국가와의 FTA에서도 제로잉 금지를 법적 의무로 규정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임.
- 중국도 전통적으로 미국의 제로잉 기법의 최대 피해자였으며 중국 스스로가 반덤핑 국내법령에서 제로잉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이므로 한·중 FTA에서 제로잉 금지의 명문화는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한·중 FTA 반덤핑 협상에서 제로잉 금지에 관하여 양국 사이에 이견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측면에서 조문화가 불필요하게 보일 수 있지만, 제로잉 금지라는 인식과 관행의 확산이라는 측면에서는 FTA 협정문에 법적 의무로 명시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향후 Mega-FTA 협상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3) 재심에서의 미소마진 원칙(De Minimis Rule) 적용

■ WTO 반덤핑 협정에는 덤핑마진이 수출가액의 2% 미만일 경우 반덤핑 관세 부과를 하지 않는 원칙이 법적 의무로 규정되어 있음.²²⁾

- 그러나 미소마진 원칙이 재심에도 적용되어야 하는지가 불분명하여 문제였음.
- WTO 반덤핑 협정에서 미소마진 원칙은 원심에 관한 조항(제5조)에 하나의 항(제5.6조)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재심에 관한 조항인 제11조가 미소마진에 관한 조항이 재심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임.²³⁾
- 미소마진 원칙이 재심에도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분쟁으로 비화되어 판정이 내려짐으로써,²⁴⁾ WTO 반덤핑협정의 해석에 관한 논란은 정리되었음.
- 사안에서 일본은 미국이 재심규정에서 0.5% 이하의 덤핑마진만을 미소마진으로 인정한 것은 2%를 기준으로 규정한 반덤핑 협정 제5.8조와 제11.3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음.
- 그러나 패널은 반덤핑 협정 제11.3조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제5.8조의 적용 가능성을 내포하지 않는다고 보아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음.
- 일본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정」 제32조를 근거로 교섭과정에 관한 증거도 제시했으나, 패널은 조약법 제32조는 협정문의 의미가 모호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본의 주장을 배척하였음.²⁵⁾

■ 우리나라의 기타결 FTA 중 미소마진 규정은 한·EU, 한·터키 FTA에만 존재.

- 한·EU FTA에는 재심에도 원심(original investigation)에서와 마찬가지로 미소마진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22) WTO 반덤핑 협정 제5.8조.

23) WTO 반덤핑 협정 제11조(재심) 제4항은 “증거 및 절차와 관련한 제6조의 규정은 이 조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검토에 적용된다. 이러한 모든 검토는 신속하게 진행되며, 일반적으로 검토 개시일로부터 12월 이내에 종결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제6조(증거)와 달리 미소마진에 관한 규정(제5.8조)이 속한 제5조(조사개시 및 후속조사)를 명시적으로는 언급하지 않고 있음.

24) *United States — Sunset Review of Anti-Dumping Duties on Corrosion-Resistant Carbon Steel Flat Products from Japan*(2013), WT/DS244/AB/R. 15 December. 이른바 일본산 부식 저항성 탄소강판 사건.

25) 김승조(2007), pp. 619~621.

는 내용이 법적 의무로 규정되어 있음.²⁶⁾

- 한·EU FTA가 WTO 반덤핑 협정의 미소마진에 관한 조항을 직접 인용하였기 때문에 수출가액의 2% 미만이라는 미소마진의 기준은 동일함.
- 한·터키 FTA에서는 반덤핑 협정에 규정된 미소마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음.²⁷⁾

■ 한·EU FTA에서 미소마진이 재심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한 부분은 WTO Plus로 평가되며, FTA 규범협상 활용의 좋은 예라고 평가됨.

- WTO 반덤핑 협정에서는 미소마진이 재심에 적용되는지가 불분명하였고 WTO 분쟁을 통해서야 비로소 재심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된 반면, 한·EU FTA에서는 미소마진이 재심에도 규정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으므로 WTO Plus로 평가됨.
- WTO 분쟁해결절차에서 패소하였음에도 EU가 자신이 주장했던 법리를 그것도 법적 의무로 한·EU FTA에 규정한 것은 FTA 규범협상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평가할 수 있음.

4) 공공이익(Public Interest)

■ WTO 반덤핑 협정에 조사당국이 증거조사 단계에서 소비자 단체에 정보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 있으나,²⁸⁾ 반덤핑 관세의 부과결정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좁은 의미의 공공이익 고려와는 법적 성격이 다름.

- WTO 반덤핑 협정의 관련 규정은 증거에 관한 조항(제6조)에 하나의 항으로 포함되어 있고 문언도 조사당국의 공공이익 고려가 아닌 정보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그 법적 성격은 증거조사 단계에서의 협의로 평가할 수 있음.
- WTO DDA 협상에서도 공공이익 고려 조항은 ‘9.1 공익과 최소부과 원칙(Public interest and Lesser duty rule)’이라는 조문제목으로 제9조(반덤핑 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되어 논의되었다는 사실이 이러한 분석의 근거임.²⁹⁾

■ 우리나라의 기타결 FTA 중에서는 한·EU, 한·캐나다 FTA가 조사당국으로 하여금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공공이익에 대해 고려할 법적 의무로 규정함.

- 한·EU FTA에서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공공이익(public interest)을 고려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

26) 한·EU FTA 제3.13조(재심에 적용 가능한 미소기준).

27) 한·터키 FTA 제4.11조.

28) WTO 반덤핑 협정 제6.12조. 당국은 조사대상 상품의 산업적 이용자와 동 상품이 소매단계에서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경우 대표적인 소비자단체에 덤핑, 피해 및 인과관계에 대한 조사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회를 부여한다.

29) WTO(2011), p. 19.

다고 (shall endeavor)고 규정되어 있음.³⁰⁾

- 한·캐나다 FTA도 ‘공공이익(public interest)에 대한 고려를 마친 후에야 최소부과 원칙의 적용을 하도록 (shall consider)’ 규정되어 있음.³¹⁾

■ WTO 반덤핑 협정에서의 공공이익 고려 의무와 한·EU, 한·캐나다 FTA에서의 공공이익 고려 의무는 조사당국이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과 공공이익 고려가 이루어지는 반덤핑 조사 단계에서 상호 차이가 있어 법적 성격이 서로 다른 것으로 분석됨.

- WTO 반덤핑 협정에서 조사당국이 부담하는 의무는 산업적 이용자와 소비자단체에 조사와 관련한 정보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적 의무로서 협의에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는 반면, 한·EU, 한·캐나다 FTA에서 조사당국이 부담하는 의무는 조사당국이 스스로 공공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탐지하여 판정을 내릴 적극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최종판정에서의 고려요소에 대한 실체적 기준을 추가한 것으로 분석됨.
- 또한 WTO 반덤핑 협정에서 공공이익 고려는 증거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반면, 한·EU, 한·캐나다 FTA에서의 공공이익 고려는 각각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 전, 또는 최소부과 원칙을 적용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차이가 있어 양자의 법적 성격은 상이한 것으로 분석됨.

5) 누적 평가(Cumulation)

■ WTO 반덤핑 협정은 2개국 이상으로부터 수입된 상품이 동시에 반덤핑 조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조사당국이 수입품들의 효과를 누적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허용함.

- 누적 평가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① 덤프마진이 미소마진을 초과하고 수입물량도 미소물량을 초과하며 ② 수입 상품 사이의 그리고 수입상품과 국내 동종상품 사이의 경쟁조건을 고려할 때 누적 평가가 적절(appropriate)하다고 조사당국이 결정하여야 한다는 2가지 요건이 요구됨.³²⁾
- 첫 번째 요건에서 미소마진 2%와 미소물량 3%라는 수치적 기준이 WTO 반덤핑 협정에 제시되어 있으므로 명확한 반면³³⁾ 두 번째 요건인 경쟁조건은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WTO 반덤핑 협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조사당국에 의한 자의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임.

■ 우리나라의 기체결 FTA 중에서는 한·EU, 한·터키 FTA가 누적 평가를 할 때에 경쟁조건의 판단에 특별한

30) 한·EU FTA 제3.10조(공공이익의 고려).

31) 한·캐나다 FTA 제7.7조 제3항 나 호의 2).

32) WTO 반덤핑 협정 제3.3조.

33) WTO 반덤핑 협정 제5.8조. 수출가격에 대해 백분율로 표시된 덤프마진이 2% 미만인 경우 덤프마진은 최소허용수준으로 간주됨. 또 특정국으로부터의 덤프 수입물량이 수입 회원국내 동종상품 수입량의 3% 미만을 점유하는 경우 또는 개별적으로 수입회원국 내 동종상품 수입의 3% 미만을 점유하는 국가들이 총체적으로 수입회원국 내 동종상품 수입물량의 7%를 초과하여 점유하지 않으면 무시할 만한 수준으로 간주됨.

주의를 기울일 것을 법적 의무로 규정하였음.³⁴⁾

- 먼저 한·EU, 한·터키 FTA가 WTO 반덤핑 협정에서 조사당국의 재량(may)으로 규정된 누적 평가에 대해서 특히 경쟁조건에 대한 판단을 법적 의무(shall)로 규정한 점은 WTO Plus 요소임.
- 또한 한·EU, 한·터키 FTA에서 누적 평가가 경쟁조건에 비추어 적절한지를 ‘특별한 주의(with special care)’를 가지고 검토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경쟁조건에 대한 검토를 강조한 점은 WTO Plus 요소임.
- 다만 경쟁조건에 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조문화하지 못한 채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추상적인 표현만을 규정한 점은 아쉬운 부분임.

3. 시사점

가. 신규 FTA 협상에서 WTO Plus 조항을 추가해 나가야 함.

■ 향후 체결할 FTA에서 제로잉(Zeroing) 금지를 법적 의무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 WTO 분쟁해결 패널의 판정으로 다양한 유형의 제로잉에 대해 WTO 반덤핑 협정 위반이라는 판정이 내려지고 있으나, 판정의 효력은 분쟁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에만 미치는 한계가 있음.
- 또한 제로잉의 주요 사용자인 미국이 기존 WTO 분쟁해결 패널 판정에서 다루지 않은 분야에서의 제로잉을 꾸준히 사용할 위험이 있으므로, 모든 유형의 제로잉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명문화해야 함.
- 제로잉 금지에 대한 미국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다른 나라와의 FTA 반덤핑 협상에서 제로잉 금지를 명문화하여 제로잉이 금지되어야 한다는 법적 확신과 관행을 확산시켜야 함.
- 특히 중국은 전통적으로 미국의 제로잉 기법의 최대 피해자였으며 중국 스스로 국내법령에서 제로잉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이므로,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상 중인 한·중 FTA에서 제로잉 금지를 명문화할 수 있을 것임.
- 제로잉 금지를 법적 의무로 명문화하는데 합의한 FTA 상대국들은 향후 Mega-FTA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우군이 될 것임.

■ 향후 체결할 FTA에서 미소마진 원칙(De Minimis Rule)이 재심에도 적용되도록 명문화해야 함.

- WTO 반덤핑 협정에는 덤핑마진이 수출가액의 2% 미만일 경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법적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나 재심에도 적용되어야 하는지 불분명했고, WTO 분쟁해결 패널은 WTO 반덤핑 협정의 해석상 조사당국이 재심에서도 미소마진을 적용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정하였음.

34) 한·EU FTA 제3.12조(누적평가).

- 비록 WTO 분쟁해결 패널은 미소마진 원칙이 재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으나, 이것은 패널이 주어진 협정문의 명시적 규정을 벗어나 해석할 수 없는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현행 협정문의 해석상으로는 타당할지 모르나, 원심에서 적용되는 미소마진이 유독 재심에서만 배제되어야 할 논리적 근거나 구체적 타당성이 부족함.
- 한·EU FTA에는 재심에서도 미소마진을 적용해야 할 법적 의무가 규정되었는데, 재심이 반덤핑 분야에서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임을 감안하여 우리나라가 향후 체결할 FTA에서 미소마진 원칙이 재심에도 적용되도록 확산시켜나가야 할 것임.

나. 기존 FTA의 향후 개정협상에서 반덤핑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한·인도 FTA의 개정협상에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인도 조사당국의 불투명하고 자의적인 조사에 의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여야 함.
- 인도는 우리나라 수출기업에 가장 빈번하게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는 국가임(표 3 참고).
- 인도가 우리나라 수출기업에 갖는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한·인도 FTA는 현재 우리나라의 Best FTA라 할 수 있는 한·EU FTA에 비하여 미흡한 점이 다수 있음.
 - 한·인도 FTA에는 한·EU FTA에서 WTO Plus로서 규정된 미소마진의 재심에서의 적용, 누적 평가에서 경쟁 조건 고려, 잠정조치에 대한 의견진술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 한·인도 FTA의 향후 개정협상에서 반덤핑 규정을 Best FTA인 한·EU FTA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함.
- 이러한 조치를 통해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인도 조사당국의 불투명하고 자의적인 조사에 의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임.

표 3. 우리나라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 국가 현황

순위	국가 명칭	건수	비중	순위	국가 명칭	건수	비중
1	인도	50	16.4%	14	터키	7	2.3%
2	미국	32	10.5%		뉴질랜드	7	2.3%
	중국	32	10.5%		대만	7	2.3%
4	EU	28	9.2%		콜롬비아	7	2.3%
5	호주	27	8.9%	18	이집트	4	1.3%
6	브라질	15	4.9%	19	칠레	3	1.0%
7	남아프리카 공화국	15	4.9%		멕시코	3	1.0%
8	인도네시아	14	4.6%	21	필리핀	1	0.3%
9	아르헨티나	14	4.6%		페루	1	0.3%
10	캐나다	10	3.3%		일본	1	0.3%
11	말레이시아	8	2.6%		이스라엘	1	0.3%
	파키스탄	8	2.6%		우크라이나	1	0.3%
	태국	8	2.6%				

주: 1978년부터 2013년까지의 통계 기준임.

자료: WTO(2014), Statistics on anti-dumping, http://www.wto.org/english/tratop_e/adp_e.htm(7월 8일)을 기초로 저자 작성.

■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누적 평가(Cumulation) 요건을 강화하거나 구체화하여 조사당국의 자의적 판단을 방지해야 함.

- 누적 평가는 중국의 부상과 더불어 우리나라 수출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조항임.
 - 우리 기업의 수출만으로는 미국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여 반덤핑 조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수출기업과 중국의 수출기업이 미국 국내산업에 끼친 피해를 누적적으로 평가하여 반덤핑 관세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음.
- FTA에서 누적 평가의 완전한 제외는 WTO 반덤핑 협정에 비추어 일종의 파격적인 제안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협상 상대국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실제로 우리나라는 한·미 FTA 협상에서 누적 평가 조항의 양국 간 적용 배제를 이끌어내지 못하였음.³⁵⁾
- 대안으로 누적 평가 요건을 강화하거나 구체화하여 조사당국의 자의적 판단을 방지해야 함.
 - 첫 번째 요건인 미소마진과 미소물량의 수치를 WTO 반덤핑 협정보다 상향하는 것이 한 가지 방안임.
 - 두 번째 요건인 경쟁조건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화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음. KIEP

35) 최낙균 외(2007), p. 228.

참고문헌

국문자료

김대순. 2013. 『국제법론』 (제17판). 삼영사.

김승조. 2009. 『WTO 통상분쟁 판례해설(I)』. 법영사.

박노형·박성훈. 2010. 「WTO 규범협상의 현황과 향후 과제」. 『무역투자연구시리즈』, 제10-01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낙균·이홍식·최세균·김도훈·이항구·이임자·이준규·성한경·강준구·김현욱·현혜정·정지원·박순찬·정명진·조미진·김정곤·박혜리·김혁황. 2007. 『한·미 FTA 협상의 분야별 평가와 정책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원목. 2013. 「17. FTA 무역규범 분야」. 『FTA 이해』 (제1권). 기획재정부.

영문자료

WTO. 1998.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Timing of the Notification under Article 5.5*. G/ADP/5. (November 3)

WTO Panel Report. 2000. *Thailand - Anti-Dumping Duties on Angles, Shapes and Sections of Iron or Non-alloy Steel and H-Beams from Poland*. WT/DS244/R. (September 28)

WTO Appellate Body Report. 2009. *United States - Continued Existence and Application of Zeroing Methodology*. WT/DS350/R. (October 1)

온라인 자료

국립국어원. 201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 (검색일: 7월 8일)

「우리나라産 세탁기에 대한 미 반덤핑상계관세조치의 WTO 분쟁해결절차 회부」. 2013.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http://www.motie.go.kr/motie/ne/rt/press/bbs/bbsView.do?bbs_seq_n=78242&bbs_cd_n=16. (검색일: 8월 29일)

「한중 FTA 연내 타결 약속한 시진핑」. 2014. 『한국경제매거진』. http://magazine.hankyung.com/business/apps/news?popup=0&nid=01&c1=1004&nkey=2014071700971000341&mode=sub_view. (검색일: 2014년 7월 7일)

WTO. 2014. "Statistics on anti-dumping." http://www.wto.org/english/tratop_e/adp_e/adp_e.htm. (7월 8일)